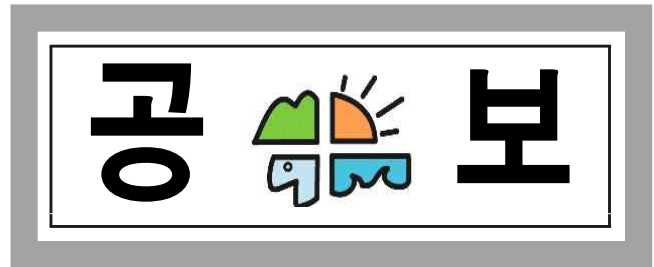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913호 2015년 1월 7일(수)

고 시

- 우제류 축산관련차량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명령..... 2

공 고

- 속초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4
○ 「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」 입법예고..... 14
○ 「속초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..... 24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고 시 문

우제류 축산관련차량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명령

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7조, 제19조의 규정에 따라,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“우제류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”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월 7일

속 초 시 장

1. 목 적 : 구제역 확산방지

2. 지 역 : 속초시 전지역

3. 기 간 : 2015. 1. 7 00:00부터 2015. 1. 7 24:00까지(24시간)

4. 대 상 : 우제류 축산관련 모든 차량 및 우제류 도축장

가. 이동제한 : 우제류 축산관련 모든 차량의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

○ 가축운송, 분뇨, 사료 등 관련차량 내·외부에 대한 일제 세척·소독 실시(바퀴, 흙받이, 핸들, 매트 등 중점소독 실시)

나. 소독실시 : 도축장, 우제류 축산관련 모든차량 및 차량소유주에 대한 일제소독

○ 축산관련 작업장 : 도축장

○ 우제류 축산관련 모든 차량 및 차량소유주 : 소·돼지·사슴·염소·양 등 우제류 농가,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인공수정사, 가축분뇨·집유차량

기사, 동물약품·사료·축산기자재 판매자, 낙농헬퍼, 백신접종요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임신진단사, 컨설팅·방역요원, 검정원 등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및 관련차량

5. 기타사항

가.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,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
나. 소독 미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,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적용

6. 문의처 : 속초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계(☎ 033-639-2583). 끝.

속초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7일

속 초 시 장

1. 제 명 : 속초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「식품위생법」의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품위생 향상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변경

“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”를 “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”로 변경

○ 관련법 조항 변경 및 제3조(기금의 조성),제4조 삭제

식품위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기금의조성 및 기금의용도 조항 삭제

○ 심의위원회 위원장, 간사 변경

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서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조성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0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217-030 / 속초시 중앙로 183

속초시 환경위생과

(전화 : 033-639-2323, FAX : 033-639-2386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환경위생과(☎ 033-639-2323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”를 “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모범음식점에 한”을 “모범음식점에 한정”으로,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“관련 업무 부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위생지도담당”을 “관련 업무 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4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을 “부시장”으로,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생지도담당”을 “관련 업무 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대해서는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 제7조”를 “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 제21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모범음식점”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. 2. (생략) 3. “시설개선자금”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·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 4. “모범음식점 육성자금”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	<u>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 ----- ----- ----- ----- 필요한----- -----. 4. ----- 모범음식점에 한정 -----

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
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
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
징수한 과징금
2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
금
4. 기타 수입금 등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
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
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
성을 위한 용자사업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
· 조사·연구사업
3. 식품위생교육 · 연구기관의
육성 및 지원
4.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
5.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
고 보상
6.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
관한 사업으로서 「식품위생법
시행령」 제42조에서 정하는사
업
7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수반되

필요한---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는 부대경비

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(생략)
2.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
3. (생략)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(생략)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② 기금은 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제7조(회계공무원)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 운용관 : 주민생활지원실장
2. 기금 출납원 : 위생지도담당

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-----

-.

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연도 -----
3. (현행과 같음)
4. 그 ----- 밖에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-
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-----

-.

②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-----

-----.

제7조(회계공무원) -----

-----.

1. ----- 관련 업무 부서장
2. ----- 관련 업무 담당

제8조(결산 및 보고 등) ① (생 략)

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금심의위원회) ①·② (생 략)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·2. (생 략)

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생지도담당이 된다.

⑤ (생 략)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·2. (생 략)

3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

제8조(결산 및 보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회계연도 -----

---.

③----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-----

-----.

제9조(기금심의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부시장-----

----- 각 호의 하나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④-----
----- 관련 업무 담당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

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
사항

②·③ (생 략)

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의
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
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
에서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
조례」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
은 속초시에서 「식품위생법시행
령」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
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(신고)를
받은 자로 한다.

제16조(용자금 위탁·관리) ① 시장
은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
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
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용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
에는 용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
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생
략)

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
하여는 「속초시재무회계규칙」
을 준용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 -----

대해서는 예산의 범위-----

-----.

제13조(용자대상) -----
----- 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
제21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
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-----.

제16조(용자금 위탁·관리) ① ----
----- 필요한-----

-----.

②----- 제1항에 따른-----

-----.

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----- 대
해

-----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「식품위생법」

제89조(식품진흥기금)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식품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~ ③ (생 략)

④ 기금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용하되,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
□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

제62조(기금의 운용)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,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」 입법예고

「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6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

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-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개관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수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하고,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2조)
-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(안 제4조)
 - 도문농요의 보존 전승, 육성, 교육, 홍보 등
- 전수관 관리 위탁 및 경비 지원근거 마련 (안 제5조)
 - 전수관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, 도문농요보유자 및 단체에 위탁
 -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음

- 전수관 시설물 및 비품 무상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지원
- 수탁자의 의무 및 변상조치 (안 제6조~7조)
 - 전승발전을 위한 노력,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
 - 수입금은 전수관 운영 목적 외 사용금지
 - 타인에게 양도 및 재위탁 금지
- 전수관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조사 감독사항 규정(안 제8조)
- 전수관 수탁자에 대한 위탁취소 규정(안 제9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701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자

(전화 : 033-639-2958, FAX : 033-639-2345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(033-639-295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속초 도문농요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속초 도문농요”라 함은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0호를 말한다.
2. “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(이하 “전수관”이라 한다)”이란 속초 도문농요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립한 전수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전수관은 속초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상도문2길 53-8 (도문동 33-4)에 둔다.

제4조(업무 및 기능)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문농요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
2. 도문농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
3. 도문농요의 선양, 홍보 및 공연
4. 그 밖에 전수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관 설립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도문농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전수관을 위탁받아 관리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관리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을 위탁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 관리·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

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도문농요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보조금, 자부담금,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관리·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, 망실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변상조치)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,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감독)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,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9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
3. 공익상 위탁 운영·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·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. 다만,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사용신청 및 허가) ① 전수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.

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.

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료 등)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.

③ 사용료는 제10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전수관에서 개최·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2. 도문농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·공연 등 설립목적을 위한 행사
3.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3조(사용료의 반환) ①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줄 수 있다.

1.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2. 전수관의 사정으로 전수관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

3.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

② 사용허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날짜에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한다.

1. 사용당일 : 미 반환

2. 사용일 전일 18시까지 : 30퍼센트 공제

3. 사용일 2일전 18시까지 : 20퍼센트 공제

4. 사용일 3일전 : 전액반환

제14조(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재해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
3.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4.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5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「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도문농요전수관 사용료(제11조 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부속시설	사 용 료 (평 일)		사 용 료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)	
		1일	80,000	1일	100,000
전수관	대공연장	오전(09:00~13:00)	40,000	오전(09:00~13:00)	50,000
		오후(14:00~18:00)	40,000	오후(14:00~18:00)	50,000
		야간(19:00~23:00)	50,000	야간(19:00~23:00)	60,000
전수관	생활시설	1일(1실당)	40,000	1일(1실당)	50,000
	취사시설	1일	50,000	1일	60,000
전수관	냉난방	시간당	10,000	시간당	10,000

※ 1일 이용시간은 생활시설 이용 기준으로 당일 13:00부터 익일 12:00까지임(기준시간 미달일지라도 이용료 전액 납부)

도문농요전수관 사용허가 신청서

신 청 인	주 소			
	단 체 명		연락처	
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
사용일시	년 월 일(: ~ :)			
사용시설				
사용목적 (행사명)				
참석예상인원				
비 고				

「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
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속초시장 귀하

도문농요전수관 사용허가서

(앞)

신 청 인	주 소			
	단 체 명		연락처	
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
사용일시	년 월 일(: ~ :)			
사용시설				
사용목적 (행사명)				
참석예상인원				

「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수관 사용을 (☐ 신규, ☐ 변경) 허가합니다.

※ 「속초도문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3조 2항에 의하여, 사용허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날짜에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합니다.

1. 사용당일 : 미 반환
2. 사용일 전일 18시 까지 : 30퍼센트 공제
3. 사용일 2일전 18시 까지 : 20퍼센트 공제
4. 사용일 3일전 : 전액반환

년 월 일

속 초 시 장

도문농요전수관 사용허가(취소·변경)신청서

신 청 인	주 소			
	단 체 명		연락처	
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
사용일시	년 월 일(: ~ :)			
사용시설				
사용목적 (행사명)				
변경내용	구 분	당 초	변 경	
	사용일시			
	기 타			
비 고				
「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 사용허가 변경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(인) 속초시장 귀하				

「속초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

「속초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6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

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- 속초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통해 향후 문화적 소산으로 가치가 있는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발굴·보존·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무형문화재의 적용대상 및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2조~3조)
 - 적용대상을 속초시 관할 보유자와 단체로 한정
-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4조~13조)
 - 운영위원회 기능, 위원회 구성 등, 위원의 해촉
 - 위원회 회의, 수당과 여비 등

○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에 대한 지원 (안 제14조~17조)

-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
- 무형문화재 단체 및 보유자의 보존전승 활동 수행
-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
- 보존전승 활동을 위한 전승활동비, 경비 등 지원사항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701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자

(전화 : 033-639-2958, FAX : 033-639-2345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(033-639-295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1조 및 「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22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·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속초시 무형문화재” (이하 “무형문화재”라 한다)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4조 및 「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중 속초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관할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.
2. “무형문화재 보유자”라 함은 제1호의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 시 함께 인증서를 교부받은 보유자(‘보유단체’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국가 및 강원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로부터 시 관할에 지정받은 무형문화재로 한다.

제2장 속초시 무형문화재 보존 위원회

제4조(위원회 설치) 무형문화재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 무형문화재 보존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

2.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등의 지정·해제 신청에 관한 사항
4. 무형문화재 및 보유자의 지원대상 여부
5. 무형문화재 가·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
6.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③ 임명직 위원은 문화재관리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,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되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1. 속초시의회 추천의원 1명
2. 속초문화원장
3.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조교
4. 무형문화재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
5. 그 밖에 무형문화재 분야에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

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고,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, 간사는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이 되고, 서기는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13조(수당과 여비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

보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및 지원

제14조(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(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활동)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·연수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·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.
2.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·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공연, 전시 등 지역축제 및 행사 참여
4.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
5.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

제16조(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) 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기능·예능의 교육을 실시하고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.

③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7조(지원금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비
2.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및 교육, 공연, 전시, 축제, 보호·육성, 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경비
3.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4.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소속 회원에 대한 전승 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등

제4장 보칙

제18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「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와 「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